

호서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2.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겸직”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사외이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하며, “사외이사 등”이란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이외 대표이사 등을 말한다.
3. 이 규정에서 “회사”라 함은 한국거래소 상장 혹은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여부를 불문한다.

제4조(겸직허가) ① 「호서대학교 교원복무 규정」 제5조의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학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겸직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다.

제5조(겸직불허대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을 불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및 해당연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2개 이상의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려는 경우
3. 재직기간 중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정부 및 본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6조(허가대상기업)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제9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지능정보기업

제7조(겸직신청) ①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사외이사 등으로서 적합한 이유 및 수행할 역할, 겸직활동을 통한 본교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겸직시작일 1개월 이전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서류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허가기간) ① 본교 교원이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겸직기관의 요청 기간으로 하되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단, 총장의 승인 하에 최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허가된 겸직기간 만료에 따라 겸직연장이 필요한 경우 겸직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절차) ①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을 겸직시작일 1개월 이전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겸직을 허가한다.

1. 겸직허가의 필요성
2. 겸직허가 기간의 적절성
3. 겸직허가 대상기관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 기타 본교에서 부여한 임무 등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등을 허가한다.

④ 학교가 교육목적이거나 산학협력 정책 등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절차를 거쳐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외이사 등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전문성, 허가의 필요성, 허가기간의 적절성, 허가대상 기업체의 적합성 등
2. 그 밖에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의 준수 여부 등
3. 겸직불허 또는 겸직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제11조(겸직교원의 의무 및 복무 관리) ① 사외이사 등의 겸직교원은 겸직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외이사 등의 겸직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의 일정 부분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연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로 한다.

③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겸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보수 일체를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④ 소속 학과장(겸직자가 학과장일 경우에는 대학장)은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이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겸직허가 취소)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 여부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5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 제2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이 허가된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책임) ① 겸직근무와 관련하여 겸직교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기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겸직자에게 있다.

② 겸직허가 취소에 따른 겸직교원의 불이익 및 겸직기관의 손실 등에 대하여 겸직교원 및 겸직기관은 본교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은 본교의 복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1.06.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